

긴급 시국토론회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

일시 | 2018. 12. 5 (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주의헌법저지국민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 순 서 ————— ■

■ 사 회

- 박 인 환 (前건국대 교수)

■ 주제발표

- 김 기 수 (변호사)
- 장 재 원 (변호사)

■ 토 론

- 김 병 철 (변호사)
- 부 상 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변호사)
- 정 승 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제발표

법관탄핵! 사법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9

- 김 기 수 (변호사)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은 민주공화국의 버팀목 19

- 장 재 원 (변호사)

■ 토 론

- 김 병 철 (변호사) 29

- 부 상 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변호사) 31

- 정 승 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37



■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김 기 수 변호사

■ 장 재 원 변호사

법관 탄핵! 사법 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김 기 수
변호사

1. 사법부(사법권력)독립의 의미

인간사회의 역사만큼 司法의 역사도 깊다. 司法의 사전적 의미는 ‘법’을 개인과 국가에 적용하여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는 일체의 권력적 행위라고 본다면 말이다. 따라서 사법은 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법과 법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다만 사법권력을 누가 행사해왔는지는 인류역사의 전개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대체로는 법의 발전에 따라 사법권력도 정치권력과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원시부족국가에서의 제정일치, 고대국가에서의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와 권력에 법의 집행이 혼합되어 권력자에 의한 사법이 이뤄졌다. 로마공화정시대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의 적용은 법무관(praetor)이 담당해왔지만 이 법무관은 민사소송만 다루지만 오늘날의 판사처럼 사실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무관은 소송요건을 심사하면서 소송의 절차중 법정의 절차만 담당했고 심판절차는私人인 심판인(index)이 담당했다. 법무관은 시민법의 결함을 요즘의 소송법에 해당되는 고시(ius edicendi)을 이용하여 보충했다. 고대 로마공화정시대에는 이 법무관이 가지는 고시권에 의한 법무관법(ius praetorium)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고시권한에 의한 법률을 총칭하여 시민법, 만민법과 구분하여 ‘명예법(ius bonorarium)’이라고 불렀고 이 명예법이 이른바 로마시대를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시민이 권리에 대한 쟁송의 개념은 로마시대이후 유럽 중세시대의 암흑기에는 소멸되었고 아시아에서 역시 이러한 쟁송의 개념이나 사법의 개념은 오로지 지배권력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사법권독립의 사상이 잉태한 것은 아마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그타카르타가 시민혁명의 결과는 아니고 영주들의 봉건적 이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헌장에 포함된 내용이 천부인권의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사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표현에 함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약하면 결국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는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법권력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국민들을 국가권력에 隸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 요체인 법관의 독립의 정도는 한 국가의 근대화의 척도이자 인권보장의 바로미터에 해당된다.

2. 사법부 예속(隸屬)의 실례

가.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

북한은 헌법에 김일성이 유헌통치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금수산 궁전에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고 참배를 통한 제정일치의 국가이자 사법권력이 계급혁명의 이념에 이바지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법관탄핵을 둘러싼 사법부독립의 현주소와 진행방향을 살펴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부국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 그중에서도 법관의 독립이 차지해온 비중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법치국가적 국가정체성을 유지해왔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적 국가정체성을 상실한 적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는 것이지만 법치국가적 국가정체성에서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만이 강조될 수는 없다.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과학과 철학의 최상위의 개념으로서 주체사상을 무장하고 있고 형식적인 민주적 정당성으로 ‘사회주의 법’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천부인권의 보장의 척도는 사법부의 독립 즉 법관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지이다.

나. 북한의 사법제도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법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유일체제로서의 북한식 사회주의적 질서의 유지수단이다.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권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법기관으로는 검찰소와 재판소가 있다. 북한 헌법은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검사제도는 수사 및 공소제기 측면에서는 우리와 유사하나, 이외에도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감시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북한 헌법은 판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 형법은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 형법 제255조 부당판결, 판정죄).

북한 헌법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북한의 사법기관인 검찰소와 재판소는 모두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8조, 제168조). 북한은 판사와 검사를 총칭하여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르며 매년 ‘사법검찰일군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북한의 사법제도는 국가의 활동 즉 사회주의국가완성이라는 국가적 이익에 봉사하고 국가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의 요람

가. 사법부 독립에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가?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가 없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관은 임명제이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사법행정의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판사들은 법원행정과 사법권능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그래서 판사들의 전국법관회의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사법부내에서만이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은 물론 대법원장의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 가히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시도만으로도 사법농단이라고 할만하다.

판사들이 사법부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사단은 법관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국회나 정부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법원리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높은 가치로 구현되어야 한다. 법관이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법원내부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칫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 ‘민심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판사는 모름지기 소송기록에 의존하여 판결해야 함에도 법정 밖의 사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이는 법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그런 법관은 법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 이런 법관들은 자신들이 입은 법복을 ‘슈퍼슈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적 정당성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법을 해

석하여 적용하는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 운용된다면 법원의 판결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들의 결단인 헌법은 각 헌법기관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회는 수의 대결을 통해서,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법원은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하도록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나. 법제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권력 쟁탈전의 무대

김명수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대법관회의의 기능을 잠탈하는 것이며 법관노조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사법행정과 사법부의 기능이 송두리째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법관대표자회의가 운용되는 실태에 대해 현직 법관들도 회의체 내의 여론을 움직이는 몇몇 주도세력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독점될 위험이 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석판사들은 그저 별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현 대법원에 우호적인 몇몇 판사들의 의견에 대하여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몇몇의 주도권을 가진 판사들이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안을 내고 몇몇 판사들이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만드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개별 법관들의 업무범위가 결정되게 되면 결국 개별법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관회의 뿐 아니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사법행정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 지침에 대해서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결의와 다르다면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의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며 사법행정의 일선최고책임자인 법원장의 권한은 유명무실화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청원내용을 법원에 알린 것에 대하여 대한변협까지 사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지만 사법권의 독립, 좋은 재판을 운운하던 자들이 압도적인 표(거의 8:2 이상의 차이) 차이로 그 성명서 채택을 부결시킨 바 있었다. 그 의결과정에서 어떤 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심의관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자고 발언해 청와대를 변호하는 기회를 준 후에 표결에 붙이는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촛불혁명 정신에 부합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사법부의 공정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파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든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일치하는 외부기

관이나 세력의 말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특별히 사법권의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배치되면 득달같이 공격한다는 것이 법관대표자회의의 현실이라고 한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자신들과 코드를 같이하면 홍위병이나 전위대가 되고, 코드를 달리하면 법관 민노총, 법관 전교조가 되어가는 징후들이 포착되며 언론은 이미 법관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정파적 이해가 없는 일반 법관들의 입에서조차 ‘홍위병’으로 회자된다고 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안건들의 상당수는 대법원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언문 채택이나, 지역법관제 도입, 배석판사 기간 제한, 대등재판부 설치와 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문제에 많이 할애되고, 나머지 시간은 선언문의 문구에 표현이 옳으니 틀리니 하는 문제로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4. 법관탄핵이야말로 진성(眞性) 사법농단이다.

가. 법관대표자회의의 법관 탄핵시도의 본질은 사법권력의 쟁탈전이다.

법관이 탄핵이 결의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출범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까지 의결한 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본인의 사법행정의 권한 및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력을 사법부내로 불러들여 코드가 맞지 않는 법관들을 사법부 밖으로 쫓아 내려는 것이 법관탄핵 파동의 본질이다. 결국 촛불혁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될만한 사법부 내의 법관들을 사법농단죄로 의율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신속한 방법으로 탄핵제도를 동원하여 다수 정당의 위력으로서 법관들을 숙청하겠다는 것이 법관탄핵결의의 핵심인 것이다.

법관탄핵결의는 문재인정권이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숙청의 명분을 만든 후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숙청의 작업을 수행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사법부 숙청작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가장 최선봉에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있다.

나.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적폐청산위원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경찰, 교육부, kbs, mbc, 기무사, 국방부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주요언론사에 이름을 달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적폐청산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대부분 기관장이나 행정각부의 지침 등으로 설치근거가 박약하며 그 활동이 과거 적폐의 청산을 목표로 인사권과 징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공통적인 면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발생한 후 등장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활동하던 시기를 방불케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국보위에서는 최소한의 위원회를 통한 입법적 조치와 초헌법적인 입법기관임을 스스로 천명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국보위 자체 활동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였다. 따라서 국보위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전가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이 자행되면서도 겉으로는 매우 합법적 조직으로 포장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초헌법적, 초법적, 월권적인 조치와 적폐의 청산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크다.

이러한 행정각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주요언론사에까지 펼쳐진 ‘적폐청산’의 작업은 좌파정부 20년 집권의욕을 보인 현 집권세력의 ‘보수궤멸론’에 근거하고 있음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법관대표자회의의 법관탄핵결의는 법관대표자회의의 본질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사법부내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실체적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아니한 법관들을 탄핵시켜 사법부내의 법관들의 코드를 자신에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스스로 설치한 법관대표자 회의가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김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스스로의 권한에 의하여 설치와 폐지가 가능한 법관대표자회의를 철폐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건국 70년 가까이 금자탑처럼 쌓아 올려온 전임 대법원장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몰각시킨 대법원장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다. 아직도 촛불잔치에 신명이 난 집권여당

법관의 탄핵을 요청한 안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하자 집권여당과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들은 대변인들을 통하여 봇물처럼 그 결정에 화답하면서 한편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을 숙청하는데 주저하는 적폐로 몰아세우며 촛불혁명을 국회가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이런 행태를 보노라면 광장의 촛불잔치를 지금도 즐기려는 것 아닌가 싶어 스스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촛불에서 햇불로 바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의 정말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이다.

만약 국회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처럼 법관탄핵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단두대를 만들어 법관부터 단두대에 머리를 올린 후 그 들도 단두

대로 보내질 것이 분명하다. 철없는 여당정치인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라. 사법부에속화의 서막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거래의혹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짓고 법관탄핵을 결의한 법관회의의 모습은 마치 2년 전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어 가는 과정과 무척 닮아 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언론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자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이미 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와 기소절차를 통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을 가지고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양승태대법원장을 비롯한 탄핵대상이 될 법한 법관들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전혀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한 공소장만으로 국회가 탄핵을 먼저 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구조는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를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만약 이번에 법관 탄핵을 국회가 추진한다면 언론 기사와 일부 법관에 대한 공소장을 베낄 것이 분명하다. 대의제민주국가인 대한민국 국회가 마치 검찰관이 된 듯 유죄 무죄의 판단을 먼저하고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유죄,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임을 망각하고 국회에 대하여 자신들이 탄핵 대상자로 결정한 법관들에 대한 공소장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제 법관들은 촛불혁명을 사법부에서도 달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현실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문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이라고 이름 붙인 공소장을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평결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어 단두대로 보내는 역할을 박근혜탄핵 때처럼 해낼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다.

북한의 검사와 판사의 임무는 국가의 정책과 당의 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나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검사와 판사는 공소제기와 판결을 잘못된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복을 입은 정치 판사들은 촛불 집권세력, 촛불 혁명세력이 부르짖는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사법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다.

정치판사들은 법을 해석하여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제 적폐에 물리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그 판결의 성향으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던 하지 않든 간에 사법부의 독립은 땅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 이제 법원에서 조금만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

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호소할 것이다. ‘저 양심 없는 적폐 덩어리인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말이다.

5. 결론 -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체제의 마지노선이다.

잘나가는 연예인으로 K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직 코미디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큰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는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인 공화주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보장된다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책임과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와 그 구제는 사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부는 모든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유의 공간, 법의 공간에 존재해야한다. 그래야만 나약한 개인의 권리가 강대한 권력에 의해 무차별하게 침해되고 국민이 신민 또는 백성으로 강등되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의 작용이며 그 역할은 직업법관들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법관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마지막 보루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법관들을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탄핵시킨다면 국민들은 권력에 예속되고 사회적종속 관계에 놓이게 되며 차별대우와 소수자의 보호밖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정도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표를 줄 테니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 달라는 아우성으로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현혹하며 표를 구걸한다. 이제 법관들조차 ‘적폐법관을 쏴아 내서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국민들을 현혹한다. 그러한 그 적폐청산의 무대를 설계한 자는 국민을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열정에 가득한 자들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딜레마는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참담한 현실이다. 누구나 행복을 갈구하지만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원초적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손에 쥐고 군림하려는 독재자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처럼 국민들의 귀에 속삭이기는커녕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귀청이 따갑도록 이런 말을 반복한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6. 참고문헌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17년 중판

조규창 로마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년

이은영 북한의사법제도개관 - 북한의 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논문 2018년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은 민주공화국의 버팀목

장 재 원
변호사

I. 들어가며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요구한 ‘법관탄핵소추 검토’안이 2018. 11. 19.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표결 결과 법관이 동료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관대표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찬성표가 반대·기권표보다 1표가 더 많아 가결되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소추 촉구 의결이 있은 후, 울산지법 부장판사인 김태규 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은 탄핵소추 결의의 부당함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비판한 반면에, 춘천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들이 충분한 논의와 소속법원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찬성표결한 것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결의를 옹호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분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소추 촉구 결의가 헌법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 구성 및 대표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I.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우리나라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국가권력을 분립시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직접 국민에게 선출되어 막강한 법률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권력 가운데 가장 허약하고 그런 이유로 국회와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큼니다. 이러한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대등한 권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 핵심이 법관의 신

분보장입니다. 법관의 신분보장이 취약할 경우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보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신분보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에는 법원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이 권력기관이나 사회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법관의 독립 중 신분보장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법관의 신분보장

가. 관련 규정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법관에 대한 파면사유의 제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탄핵대상 공무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

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판사의 탄핵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위한 사법권의 독립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견제장치로 마련한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 징계처분의 효력제한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헌법은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관징계법에서도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처분에 “해임”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설치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받지 않고, 법관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3인 이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퇴직사유의 제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인 경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7조).

마. 소결

이렇게 우리 헌법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으로 ①법관에 대한 파면사유의 제한, ②징계처분의 효력제한, ③퇴직사유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에서도 법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법체계와 현재 수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법관 탄핵을 요구한 것의 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Ⅲ. 헌법적 차원의 검토

1. 삼권분립 원칙을 명백히 위반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2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속한다고 하여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권한은 국회의 권한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국회에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여 특정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한 것은 법관들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법관이 정치인처럼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2. 법앞의 평등,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열거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법관의 파면사유에 탄핵과 금고이상의 형을 동등하게 놓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그 위반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지, 벌금형 정도에 불과한 경우 탄핵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적이 없고,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정도 되지 않았고,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었으며, 그 위반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지도 판명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관들이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기사 몇 개로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유죄로 단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법관들이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침해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 촉구 결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언론기사 만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 앞서 탄핵결정을 함으로써 유죄가 결정되었습니다. 뒤늦게 형사재판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관대표회의의 법관들이 다수결로 해당 법관들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유무를 떠나 향후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법관대표회의의 유죄 평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들이 동료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IV.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문제점

1. 서

법원에는 종래 각급법원별로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파동이 있는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지자,

2018. 3. 7.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2018년 4월부터 공식기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회의체 구성 측면에서 전체 법관 및 법원을 대표할 정도로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판사회의'와의 비교

가. 판사회의

법원조직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 이상의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고 하고, 제2항에서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1993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위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법원조직법 제9조의2 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고(위 규칙 3조), 각급법원의 장이 판사회의의 의장이 되어(위 규칙 6조), 판사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위 규칙 4조),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위 규칙 5조), 또한 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위 규칙 14조1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이 설치근거 규정이고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되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하고, ①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의 별로 대표자 1명씩 선출, ② 법관 정원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내부판사회의 별로 대표자 2명씩 선출하고, 법관 정원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내부판사회의 별로 대표자 3명씩 선출, ③ 지방 소재 가정법원,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은 판사회의에서 대표자 1명씩 선출, ④ 대법원 재판연구관 회의에서 대표자 2명을 선출, ⑤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은 각 법관들의 회의에서 대표자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2조1항 및 별표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하고(위 규칙 3조1항),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두차례 개최되며(위 규칙 제5조),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

나 건의할 수 있고(위 규칙 6조1항),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 규칙 9조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탄핵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문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소추 촉구하라고 의결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탄핵하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루되었다고 언급되고 있는 판사가 적게는 6명, 많게는 90명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과연 누구를 탄핵하라는 건지, 몇 명이나 탄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특정이 중요한데, 탄핵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결의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4.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문제

가. 인적 구성의 문제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체 법관과 사법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연방사법회의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13개 항소법원장들과 지방법원에서 뽑은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데, 지방법원에서 뽑은 대표는 대부분 지방법원장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장이 법원장들과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재 의장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고, 부의장은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장판사가 의장, 부의장을 맡고 있고, 15년차 미만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법관회의 구성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체 구성도 부장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급별로 나누고 있고, 법원별 인원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게리멘더링 문제를 안고 있어 대의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소속 법원의 법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명실공히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구의 위상을 가지고자 한다면, 법관대표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구성원도 판사회의의 의장인 지방법원장을 비롯하여 각급 법원의 법원별 인원수와 직급별 인원수에 반영하여 회의체 구성원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나. 법관대표의 의견수렴방식 문제

법관대표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소속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표결을 하였는지는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 글과 춘천지법 판사의 글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그 글을 먼저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 김태규 부장판사 글

“법관 전체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직접 그 의사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의결정족수를 가중정족수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탄핵 발의자들은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대표법관은 자신이 소속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그것과 반대되게 투표를 하였고, 또 어떤 법관은 법관대표가 소속 법관들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2)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 글

이에 대해 춘천지법의 한 판사가 반박하며 올린 글이 중앙일보에 소개되었는데, “찬성표결을 한 대표들도 논의결과와 소속 법원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표결한 것이라며 만연히 특정 연구회 회원이라서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찬성 표결을 하였다고 몰아붙인 것은 억측이다.... 대표선정 방식은 각급 법원 자율에 맡겼는데,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 한 명을 떠밀어 대표로 내몬 법원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의 결정으로 봐야하고, 그런 법원이 있다고 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검토

대표선정 방식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을 한 경우도 있고, 누구 한 명을 떠밀어 대표가 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대표가 된 법관이 소속 법관들의 의견수렴과 반대되게 찬성투표를 했고, 법관대표가 소속법관들의 의사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주장일까요?

법관대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국회의원처럼 볼 수 없고 일종의 자치조직인 내부 판사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대표로 나왔는데 소속 법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그 판사를 대표로 보낼 때, 위임범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들이 대표 법관 전체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표결해도 된다고 동의해 줬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동료 법관을 탄핵하는 중대한 안건의 경우라면, 더더욱 소속 법관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였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고 이와 반대되는 투표를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투표했다면 그 법관의 대표성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판사의 70%가 탄핵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대표가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판사들은 대표가 우리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회의를 개최하여 법관대표 교체와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V.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의견을 낸 법관들은 “국민의 뜻이 그렇다”, “언론이 질타하고 있다”, “여론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말한 판사들은 수가 많으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나 본데, 다수결은 결코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법과 절차를 통해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여론에 따른 정치재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판사의 탄핵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 판사들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정치적 의도하에 정치권력의 힘을 빌려 동료판사를 법원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남미 출신 이주자의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정책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에게는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 뿐이라며 이렇게 독립적인 사법부야말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가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대조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사법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돼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자신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 정책토론회

토론

■ 김 병 철 변호사

■ 부 상 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정 승 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 가짜 중도의 장막을 걷어 치워버려라

김 병 철
변호사

최근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재판 결과의 거래에 판사가 개입한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일을 한다고 탄핵이 가능한지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은 지겹다. 국제 인권법 학회 출신 판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좌익측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탄핵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정당에서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며,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도의 탈을 쓰고 좌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그들의 속내를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나 안다. 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있는 사실이든 없는 사실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중도의 탈을 쓴 우익 판사들이 등장할 때이다. 중도의 탈을 쓴 좌익 판사들에게 좌익정당은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해주고 성공의 비단길을 깔아 줄 것이다. 우익 판사들도 이제 중도의 탈을 쓰고 나와라. 그리고 자신을 베티해라.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해주고, 성공의 비단길로 달려갈 우익 판사들은 없는가?

이제 좀 거시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자, 가장 좋은 경우는 판검사들 모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의 탈을 쓴 좌익 판검사들이 이러한 중립 의무를 다 무너뜨려버렸다. 여기에서 중도 중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을 좌익 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만다. 결국 이러한 최악을 막으려면 이제 우익 판검사들이 중도의 탈을 쓰고 무언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표로 그려보자

좋은 순위	내용
1	판검사들 모두 정치적으로 중립인 것
2	판검사들도 인간이므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되, 좌우익 검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
3	판검사들이 모두 좌경화 되거나, 모두 우경화되는 것

3순위보다는 2순위가 낫지 않은가? 더러운 가짜 중도의 장막을 걷어 치우고, 이제 중도의 탈을 쓴 우익 판검사들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최악은 막아야 하지 않나?

법관 탄핵 결의의 숨은 의도는?

변호사 부상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탄핵이란?

- 탄핵(彈劾, Impeachment):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
- 탄핵절차:
 - 1) 소추의결과 소추절차-국회
 - 2) 심판절차-헌법재판소
 - 3) 결정의 내용과 효력-당해 공직에서 파면(민/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7. 3. 10. 결정 2016헌나1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법관에 대한 탄핵에 관한 헌법 규정

탄핵의 근거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법관의 신분보장 근거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 대상(객체)의 비교

-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 외 공직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음**
- 그러므로, 그 외 공직자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그 외 징계(파면, 해임 등)도 가능함
 - ☞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停職) · 감봉 · 견책(諒察)
 - <검사징계법 제3조 징계의 종류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파면과 강등이 없음>
- 단,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에 의한 파면은 불가능하고, 법관징계법 제3조도 헌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만 규정함
- 따라서, **법관에 대한 파면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임**

현재 상황

- 법관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
- 특별재판부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
 -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56명
 - 2)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와 심각한 충돌-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
 - ★ **토론자 사건**으로는 특히 법안 제10조(국민참여재판), 제11조(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제12조(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제14조(재판기간), 제15조(사건의 대국민보고)는 심각한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런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을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전국법관대표회의

- 근거규정: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 제2777호, 2018. 3. 7. 제정)
- 구성: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대표자 각 1명(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3명,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 2명,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중 2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 각 1명)
- 임무(규칙 제6조 제1항):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건의
=> 누구에게 의견 표명 또는 건의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음(단, 최근 법관탄핵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보도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발표가 있었음)
- 최근 쟁점: 대표자인 판사의 기속성에 관한 쟁점이 발생(울산지법 등 사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건의 의결

- 법원 내부의 권력투쟁?

- 탄핵은 입법부의 다른 국가기관 핵심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 법관에 대한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 신분보장에 대한 유일한 예외(헌법적 결단)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은 법관이 **외부의 힘을 빌어** 법관 스스로 독립성과 신분 보장에 대해 도전 => 세력다툼의 문제로 비화될 경우 **사법의 독립성 자체가 흔들림**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건의”에도 위배됨

헌법과 법률로 만든 사회계약(법관의 신분보장)을 스스로 깨고

‘법관의 법관에 대한 투쟁’ 상태로 격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상

- 대법관회의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무력화 시도
 - 국민은 전국법관회의의 의견표명을 법원의 목소리로 오인하고 있음
 - 전국법관대표회의 특정세력이 대법원장과 결탁하는 경우 대법관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의 최고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높음
- 특정 세력의 법원행정사무 독과점 구축
 - 결국 인사권을 통한 법관의 지배로 이어질 수 있음

정 승 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법권의 독립¹⁾

공화주의에서 출발(아테네, 다수의 독재와 중우 민주정에서 탈피)

국민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 원칙과 3권 분립의 원칙

비정치적 권력인 재판권 보호를 위한 사법권의 독립²⁾.

가. 법원의 독립

〈 3권 분립(집행권, 입법권과 권력 분립과 견제) 〉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임명

국회의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동의,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및 탄핵소추

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

〈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 〉

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독립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

다. 법관 인사의 독립

임명 : 대법관회의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자격 : 법률(정년과 적격심사에 따른 연임제),

탄핵과 형의 선고에 따른 파면 +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징계)

2. 법관의 법관에 대한 탄핵 요청 결의

1) 헌법 제5장 법원 (101조-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111-113조)

2) 몽테스키외 저 법의 정신, 김경희 저 공화주의 등

가. 탄핵 요청 결의 내용

국회에 대한 탄핵 소추 요청 결의 [법관 탄핵소추 검토 안]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 결정 요청 결의

나. 3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

우선 국회의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출발해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는 대법원장·대법관 이외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대통령과 정부 각료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탄핵 소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적 문제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재량행위³⁾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거나, 동료 대법관에 대하여 탄핵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인 행위가 된다. 결국, 사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판사들(법관대표회의의 판사)의 탄핵 소추 요청은 대법원장에게 위헌적 행위를 요구하는 위헌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야 말로 명백한 탄핵 대상인 행위에 해당된다.

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한편, 국회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3권 분립에서 출발한 사법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라는 요소보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법관 인사의 독립에서 출발한 법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요소가 강하다. 비정치적 권력인 사법권의 허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관의 신분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은 사실상 법원의 독립을 통해서 보장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통해서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사법부 내부의 독립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상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주변 법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포함된다.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소추 요청은 동료 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상부로부터의

3) 국회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주변 법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행위에 불과하다.

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데, 사법권의 본질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된다. 속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거쳐 지금은 '좌파무죄 우파구속'이라는 '정치재판, 정치판사'라는 비아냥이 세간에 무성하다. 정치 문제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행위인데, 일부 판사들이 탄핵 소추 요청이라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 소추 요청이 정치적 중립인가? 사법 농단, 사법 적폐, 재판 거래 등등으로 현 정권에 수사를 요청하고, 현재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게 탄핵 소추를 요청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법적 행위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궤변이다.

마. 법관대표회의 설치의 위법성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사법기관법정주의도 포함된다. 모든 국가기관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으로부터 기관법정주의가 요청된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도 없는 법관대표회의라는 인민위원회가 설치된 후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은 사라지고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위법적인 법관대표회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가?

3. 결론

실체적 진실 확인을 핵심 업무로 하는 판사들이 단순히 추측 또는 언론보도만으로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 요청하는 행위야 말로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를 파괴시킨 행위이다.

법관 탄핵 소추 요청 결정에 찬성한 판사들, 너희에게 물어 본다.

탄핵 요청 결의의 원인이 된 속칭,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무엇인가? 확정된 사실인가?

얼마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지켰는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는가?

다수 국민들이 너희들을 ‘정치 판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와 편향된 언론 보도에 떨고 있는 비겁한 판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너희 재판을 ‘편향된 이념, 그릇된 개인적 신념에 오염된 재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앙차 9층(순화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